

이 문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의 문서입니다.  
 정식 문서는 보건소가 발행한 일본어 문서입니다.

⑦ **입원권고에 근거한 입원치료의 의료비공비부담제도 (37조)**

★ 대상자

[감염증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]에 근거하여 [입원권고] 및 [입원기간의 연장통지]에 의한 결핵병상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분.

★ 대상이 되는 의료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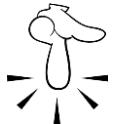
- ① 진찰 ②약제 또는 치료 재료의 지급 ③의학적 처치·수술 및 기타 치료 ④입원 및 치료에 따른 간병 기타 간호(식사비용 포함)  
 (차액 침대비, 전기요금, 진단서류 등 보험적용이 안되는 비용은 공비부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.)

★ 자기부담액

본인, 배우자 및 동일 생계 직계가족의 수입에 따라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합니다.

\*합계 연간소득세액 : 147 만엔 이하  
 자기부담금 없음 (0 엔)

\*합계 연간소득세액 : 147 만엔 이상  
 자기부담금 있음 (2 만엔/월)



보 험	공 비
-----	-----

보 험	공 비
-----	-----

★ 신청에 필요한 서류

- 1 결핵의료비 공비부담 신청서 . . . 보건소 또는 병원에 있습니다.
- 2 세대조서 [별지 1] . . . 굵은 선 안쪽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3 건강보험증 사본 . . . 환자분의 보험증. 보건소에서 복사합니다.
- 4 주민표(환자분과 동일세대 전원. 친족,혈연 등의 관계가 기재되어 있는것)
- 5 소득세액 증명 서류·세대조서에 기재된 분 중 입원비 부담 의무자(별지참조)의 소득세액 증명 서류. 소득이 없는 분도 없는것을 증명.

(1)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분

ㄱ 급여소득자 . . . 사업소 발행의 「년도분 ※의 원천징수표」

ㄴ 연금수급자 . . . 연금사무소 발행의 「년도분 ※의 연금등의 원천징수표」

(2) 확정신고를 하는 분

세무서 발행의 「년도분 ※압세증명서 (그 1)」



(3) 생활보호를 받는 분  
복지사무소 발행의 「수급증명서」

(4) 기타 수입이 없는 분  
시청에서 발행한 「시·현민세 (비) 과세증명서」

※입원이 1 월 1 일~5 월 31 일까지인 분...전전년도분, 6 월 1 일~12 월 31 일까지인 분...전년도분  
또한 5 월과 6 월에 걸쳐서 입원하신 분은 양쪽 다 필요합니다.

★ 기타

공비부담을 받고 있는 기간에 주소·성명·보험의 종별등 변경이 있는 경우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·상담은 . . .